

[별표 11] <개정 1983.2.1, 1984.1.31, 1984.10.4, 1984.12.31, 1985.8.12, 1985.9.9, 1986.1.25, 1986.12.30, 1987.4.1, 1987.6.27, 1987.12.31, 1988.8.1, 1988.12.31, 1989.6.17, 1990.1.15, 1990.12.27, 1990.12.31, 1991.4.27, 1991.12.31, 1992.3.28, 1992.12.31, 1993.12.31, 1994.12.19, 1994.12.23, 1994.12.31, 1995.3.23, 1995.12.29, 1996.2.22, 1996.5.7, 1996.8.8, 1996.12.31, 1997.12.27, 1998.6.1, 1998.12.31, 1999.12.28, 2000.1.8, 2000.4.18>

특 수 업 무 수 당 지 급 구 분 표

구 분	수 당 명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및 지 급 방 법
1.기술 분야	가.기술업무수당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광공업·농림수 산·물리·보건 의무· 환경·교통·시설 및 정보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2) 외교통상부소속의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에 규정 된 해양경과의 경찰공무원 및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 사하는 자와 통신 경과의 경찰공무원 4) 소방기관에서 유무 선 통신조작업무에	5급·경정·소방령이상 : 월 25,000원이하 6급·7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 월 15,000원이하 8급·경사·소방장이하 : 월 10,000원이하 지도관 : 월 35,000원이하 지도사 : 월 25,000원이하 (가산금) 가)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 원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기술직공무원·정보통신부소속 전자통신기술직공무원으로서 전자교 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과 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중 원자력발전소주채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 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급이상은 월 25,000원이하, 6급이하는 월 20,000원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5)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 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행정직군의 4급이하 전산직렬 및 행정직군의 3급 이상중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6)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 공무원	
--	--	--	--

		7) 특수무기의 주정비 기술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는 군인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자와 학사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는 자	월 50,000원이하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산업기	월 40,000원이하

		사·기능사의 자격 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하 는 군인 및 학사학 위를 소지하고 해 당기술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 인	
		10) 7)에 해당하는 업 무 또는 기상예보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 기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 인	월 30,000원이하
	나. 삭제 <2000.1.8>		
2. 교육 및 연구분 야	가. 연구업무수당	1) 통일부 및 과학기 술부소속 별정직공 무원으로서 연구업 무를 담당하는 자	5급상당이상 : 월 25,000원이하 6급상당 및 7급상당 : 월 15,000원이하 8급상당이하 : 월 10,000원이하
		2) 교육공무원법 제2 조에 규정된 교육	가) 지급액 ○ 장학관·교육연구관

		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행정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에 보직된자와 부교육감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 5년이상 : 월 22,000원 ● 5년미만 : 월 37,000원 ○ 장학사·교육연구사 ● 5년이상 : 월 17,000원 ● 5년미만 : 월 32,000원 나) 지급방법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에 보직된 자의 월지급액은 5년이상 7,000원, 5년미만 22,000원으로 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을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월지급액은 5년이상 5,000원, 5년미만 20,000원으로 한다.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계산은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연구직공무원	월 55,000원이하
		4)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립방재연구소소속 연구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업무를 직접 담당하	1) 연구직공무원 연구관 : 월 80,000원이하 연구사 : 월 55,000원이하 2)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이상 : 월 50,000원이하 6급상당 및 7급상당 : 월 35,000원이하 8급상당이하 : 월 30,000원이하

	는 자	
나.교재연구수당	1) 각급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세무대학·국방대학교·국립사회복지연수원 기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를 제외한다),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치료감호소 또는 교도소등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	가) 지급액 5급(5급상당 포함)·경정·소방령이상 : 월60,000원이하 6급(6급상당 포함)·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이하 : 월 40,000원이하 나) 지급방법 교재연구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당해 교육훈련실시기관의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비 고) 다만,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5)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소속 국립 재활원에서 심신장애자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정신병원부설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소속 공무원중 농기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	
		2) 국방대학교·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국방대학교·사관학교 및 국군간호 사관학교의 전임강사이상, 단기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 월 40,000원이하 단기사관학교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월 35,000원이하

		3) 공군기술고등학교 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	월 20,000원이하	
		4) 3년을 초과하여 복 무하는 자로서 군 사학 전문교육기관 (신병교육기관을 제외한다)에서 직 접 강의를 담당하 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	영관 및 4급이상 : 월 30,000원이하 위관 및 5급·6급 : 월 20,000원이하 하사관 및 7급이하 : 월 15,000원이하	
		5)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 생수련기관 등 교 육연수기관에 근무 하는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통일교육원·외교안 보연구원·경찰대학· 세무대학·국방대학 교·국립사회복지연 수원 기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 수·부교수·조교수·	구 분	
			원 장	110,000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110,000원
		부 장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100,000원 80,000원	
		비고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 임강사의 난을 적용한다.		

	전임강사		
다. 삭제 <1996.12.31>			
라. 내지 바. 삭제 <2000.1.8>			
사. 교원등에 대한보전 수당	1)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 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과정 또는 초등학교과정을 담 당하는 교사와 유 치원과정 또는 초 등학교과정인 특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2) 국·공립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 는 교원(중학교·고 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 교에 설치된 중학 교과정 또는 고등	구	분
		1)의 해당자 ● 5년이상 ● 5년미만 2)의 1해당자 ● 5년이상 ● 5년미만 2)의 2해당자 3)의 해당자	월지급액 8,000원 23,000원 3,000원 18,000원 15,000원 20,000원
		(가산금)	
		지급대상란 1)의 경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또는 초 등학교과정과 유치원과정 또는 초등학교과정인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원장 또는 교장에게는 월 40,000원, 원감 또는 교감에게는 월30,000원, 주임교사 에게는 월 25,000원, 교사에게는 월 20,000원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 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계산은 1월 1일과 7월 1일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학교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인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자 2. 1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5년미만인 자 3)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세무대학·	
--	--	---	--

		국방대학교·국립사회복지연수원 기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중 5년 미만근무자.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에 겸보된 자를 제외한다.	
	아. 삭제 <2000.1.8>		
	자. 교직수당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다만, 다음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그 사유가 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가산금을 각각 병급할수 있다.	월 250,000원
		(가산금 지급대상)	(가산금)

	1) 고등학교이하의 각 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 준으로 30년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 교육법 제19조제1 항, 고등교육법 제 14조제1항 내지 제 4항에 규정된 교원 으로 근무한 경력 을 말한다)이 있고 55세이상인 교사	월 50,000원
	2) 고등학교이하의 각 급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	월 30,000원
	3) 고등학교이하에 근 무하는 교원중 다 음 각호의 해당자 1. 국·공립의 특수학교 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 하는 교원 2.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	월 50,000원

		지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3.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4. 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4)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 학급담당교사	월 60,000원	
		5)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당해 교과목을	호 봉 별	월 지 급 액
31 ~ 40	50,000원			
22 ~ 30	45,000원			
14 ~ 21	40,000원			
9 ~ 13	35,000원			
	5 ~ 8	30,000원		
	1 ~ 4	25,000원		
		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와 부산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담당하는 실과담당 교원 1. 교원자격검정령시행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과목중 공업·토목·건축·기계·자동차·전기·전자·통신·화학·섬유·금속·자원·공업예·요업·식품가공·조선·인쇄·전자기계·전자계산기·전자계산·환경공업·디자인·의상·사진·중기·농업·임업·축산·원예·잠업·농업토목·농업기계·조경·농산물유통·수산업·어업·양식·항해·기관·냉동 2. 교원자격검정령시행 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계·공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 과목	교장·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전자통신 또는 전기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차. 및 카. 삭제 <2000.1.8>							
3.특수 장비 취급 분야	가. 열차운전 및 철도 작업수당	1) 직접 열차를 운전 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1) 1인 및 2인 운전 기관사 6급 및 기능6급 이상 기관사:월 120,000원 이하 7급 및 기능7급 기관사:월 110,000원 이하 8급 및 기능8급 이하 기관사:월 100,000원 이하 기관조사 : 월 50,000원 이하 (2) 1인 운전 기관사 가산금 (단위 : 원 이하)					
			월 1인 운전시간		8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4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지급액		50,000	40,000	30,000	20,000
			다만,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으로 근속한자로서 사고없이 100만킬로미 터 이상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철도보선·입환업무 및 작업분야에 근 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공무원 1. 보선분야 : 레일 및	가) 지급액 (1) 보선 및 입환분야 6급 및 기능6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7·8급 및 기능7·8급 : 월 24,000원 이하 9급 및 기능9급 이하 : 월 18,000원 이하 (2) 철도작업분야 : 시간당 1,000원					

		침 목 등 을 직 접 운 반 하 여 철 도 개· 보 수 작 업 을 수 행 하 는 공 무원 2. 입환분야 : 열차운 행 을 위 하여 열차의 조 성 · 입 환 등 의 작 업 을 수 행 하 는 공 무원 3. 철도작업분야 가) 길이 100미터 이 상의 터널안 또는 교량위에서 계속	나) 지급방법 (1) 지급대상란 3.의 가)해당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2) 지급대상란 3.의 나)해당자에 대하여는 동일인에게 하룻밤 4,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야간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3) 지급대상 1.의 대상자가 지급대상 3.과 같은 조건하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용되는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1시간 이상 작업 에 종사하는 선로 반 근무공무원 또 는 전철구간의 전 기분소·변전분소 및 보안분소 근무 공무원 나) 풍수해·설해·낙석· 화재 기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 을 때 야간에 철 도선로 또는 전철 선로를 순회근무 하는 선로반 근무 공무원 또는 전철 구간의 전기분소· 변전분소 및 보안 분소 근무 공무원	
	나. 삭제 <2000.1.8>		
	다. 방송·신문· 영화및 마 이크로 필 름 제 작 업 무수당	1) 국방부 및 농촌진 흥청에서 방송·신 문 또는 영화제작 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공무원	5급(5급상당포함)이상 : 월 35,000원이하 6급(6급상당포함) 및 7급(7급상당포함) : 월 25,000원이하 8급(8급상당포함)이하 및 기능직 : 월 20,000원이하

	2) 국정홍보처에서 방송 또는 영화제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행정자치부·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마이크로 필름 제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라. 갑문운영 및 등대관리업무수당	갑문관리소에서 갑문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 등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	5급이상 : 월 25,000원이하 6급 및 기능6급이상 : 월 22,000원이하 7급 및 기능7급 : 월 16,000원이하 8급 및 기능8급 : 월 13,000원이하 9급 및 기능9급이하 :월 10,500원이하
마. 전기·위험물 및 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수당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월 30,000원이하 ·전기안전관리보조원 : 월 15,000원이하
	소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월 10,000원이하

바. 광산보안 담당수당	산업자원부소속 공무 원중 광산보안법 제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광산보안관	5급이상 : 월 20,000원이하 6급이하 : 월 15,000원이하																		
사. 삭제 <2000.1.8>																				
아. 선박 및 함정근무 수당	1) 교육부·보건복지부· 관세청·수산청·해 양수산부·해양경찰 청소속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 순찰대소속 경찰 공무원으로서 월 10일이상 선박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5급·조교수이상 : 월 39,000원이하 6급, 기능6급이상, 전임장사 및 경감 : 월 32,000원 이하 7급·기능7급·조교 및 경위 : 월 25,000원이하 8급·기능8급 및 경사이하 : 월 20,000원이하 (가산금) 관세청소속 세관감시선 및 해양수산부소속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게는 월 10,000원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월간의 항해일수를 통산 하여 10일이상이 될 경우에는 1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2) 함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경찰공무 원 또는 소방공무 원	1) 경찰공무원 <table> <tr> <th>계</th><th>급</th><th>월지급액</th></tr> <tr> <td>경</td><td>정</td><td>100,300원</td></tr> <tr> <td>경</td><td>감</td><td>82,600원</td></tr> <tr> <td>경</td><td>위</td><td>76,700원</td></tr> <tr> <td>경</td><td>사</td><td>70,800원</td></tr> <tr> <td>경</td><td>장</td><td>64,900원</td></tr> </table>	계	급	월지급액	경	정	100,300원	경	감	82,600원	경	위	76,700원	경	사	70,800원	경	장	64,900원
계	급	월지급액																		
경	정	100,300원																		
경	감	82,600원																		
경	위	76,700원																		
경	사	70,800원																		
경	장	64,900원																		

			순 경 전 투 경 찰 순 경	53,100원 18,000원
			2) 소방공무원	
			소 방 령 이 상	65,000원
			소 방 경	50,000원
			소 방 위	37,000원
			소 방 장	34,000원
			소 방 교	30,000원
			소 방 사	21,000원
			(가산금) 가)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1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나) 해양경찰청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출동 일수 매 1일마다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3) 함정승무원으로서 3월에 1회이상 출 동하는 군인 및 군 무원 가) 지급액 (1) 하사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특수함승무원 : 월봉급액의 150%이하 ·기타 함정승무원 : 월봉급액의 80%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1) 하사에 대하여는 그 최저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자. 항공수당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인	계	급	월지급액
		경 정 이 상		407,000원

		경찰공무원(무장제트헬기 및 해상초계기에 한한다)	경	감	330,000원
			경	위	264,000원
			경	사	165,000원
			경	장	154,000원
			순	경	143,000원
			다만, 정비사에게는 월지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2) 제트기 조종사와 조종교관으로서 3월에 1회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50%이하 나) 지급방법 이 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제트기 조종사외의 조종사로서 3월에 1회이상 비행하는 군인 또는 동승근무자로서 3월에 1회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20%이하 나) 지급방법 이 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4)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 항공무선표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해양경찰청소속 공무원중 해양오염감시 및 방제업무를 위한	5급이상 : 월 50,000원 6·7급 : 월 40,000원 8·9급 : 월 30,000원 기능직 : 월 20,000원		

	항공기 동승근무자 로서 1월에1회 이 상 비행하는 공무 원		
	5) 삭제 <2000.1.8>		
차. 기마수당	기마경찰대소속 경찰공 무원	월 10,000원이하	
카. 대테러 특수전술 업무수당	대테러특수전술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 된 경찰특공대소속 경 찰공무원	계 급	
		경	정 65,000원
		경	감 60,000원
		경	위 55,000원
		경	사 50,000원
		경	장 45,000원
		순	경 40,000원
타. 수륙양용 궤도차량 승무수당	군인으로서 수륙양용궤 도차량승무자	가) 지급액 하사이상 : 월봉급액의 55%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파. 군인등의 장려수당	1) 3년을 초과하여 복 무하는 군인중 정 밀고가장비등 특수 장비 조작운용요원 2) 3년을 초과하여 복 무하는 군법무관등 의 특수장교	가) 지급액 1)의 해당자 : 월 35,000원이하 2)의 해당자 : 월 450,000원이하 3)의 해당자 : 월 130,000원이하 4)의 해당자 : 월 200,000원이하 5)의 해당자 : 월 110,000원이하 나) 지급방법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 4)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 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종사 군무원	수당의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하 . 의 료 업 무 등의수당	1) 보건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군무원을 포함한다)	(월지급액, 단위 : 원)				
		의 무 직 렬 공 무 원			약무직렬 공 무 원	간호직렬 공 무 원
		지역별	자격	금액		
		가 (군 지 역)	전문의 일반의	650,000 550,000		
		나 (다·라외의 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550,000 450,000		
		다 (라외의 도청소재지인 사지역)	전문의 일반의	450,000 350,000		
		라 (특별시·광역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400,000 300,000		
		(비고) 광역시의 읍·면과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의 읍·면에 소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가지역을 적용한다.				

			월 50,000원
		2)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 반직공무원(일반군 무원 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	월 70,000원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가축방역 및 동 물·축산물의 검역업 무와 축산물위생처 리법에 의하여 수 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 표 1의 수의직렬공 무원(수의담당 군 무원을 포함한다)	

		중 수의사 면허소 지자에 한한다]	
	거.특허업무수당	특허청소속 공무원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	5년이상 : 월 50,000원이하 5년미만 : 월 30,000원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특허청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너.화재진화수당	화재현장에서 인명구 조 및 화재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 무원(소방관파출소·소 방관출장소 및 구조대 에서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월 40,000원이하
4. 특수 행정 분야	가. 민원업무수 당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민 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 원	가) 지급액 월 30,000원이하 나) 지급방법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는 주무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국세 심판 수당	재정경제부소속공무원중 국세심판관·조사관(국세 심판소 행정실장포함)	월 40,000원이하
	다. 전산업무수 당	전산업무(천공·검공업무 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 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가) 지급액 ·3년이상 근무자 : 월 50,000원이하 ·1년이상 3년미만 근무자 : 월 30,000원이하

		군무원을 제외한다)	·1년미만 근무자 : 월 20,000원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나) 지급방법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중 전산직렬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주무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법제업무및 감사원근무수당	1) 법제처소속 공무원으로서 법제업무를 담당 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 2)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1급 및 2급: 월 40,000원이하 3급 및 4급: 월 33,000원이하 5급: 월 20,000원이하 6급: 월 10,000원이하 7급: 월 6,500원이하 8급: 월 4,000원이하 9급: 월 2,600원이하	
마. 감호 및 계호업무수당	법무부소속공무원중 치료감호소·보호감호소 및 보호감호처분을 병과받은 수형자를 집단수용하는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경비교도를 제외한다)	월 90,000원이하	
	법무부소속공무원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포함)·소년원·소년분류	월 60,000원이하	

		심사원·외국인보호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감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를 제외한다)과 국방부소속 공무원중 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바.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근무수당	1) 법무부의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부의국립동물및식물검역소, 보건복지부의국립검역소,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검찰청,관세청 및 병무청소속 공무원중 국제공항(외국인이출입하는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별정직(전산업무담당 제	월 35,000원이하

	외) 및 기능직공무원 2)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여객선에 승선한 여객과 적재화물에 대하여 상시 통관·감시·검역등 출입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3) 삭제 <1990.12.31>		
사. 현업작업장 려수당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가) 지급액 ·정보통신부소속공무원 : 월 50,000원이하 ·철도청소속공무원 : 월 50,000원이하 ·국립의료원소속공무원 : 월 20,000원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교통부령 및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아. 개방형직위 보전 및 국제전문직위 수당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과장	계 급	
		1 급	400,000원
		2 급	300,000원
		3 급	200,000원
		(비 고)	

		급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의 규정 기타 공무원 임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 무 기 간	월지급액
			1년 이상 2년 미만	3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50,000원
			3년 이상 5년 미만	80,000원
			5년 이상	100,000원
			(가산금) 외국어능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80,000원을, 나등급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 고) 1) 근무기간은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주무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자. 사서수당	국립중앙도서관소속사서직 공무원(사서직군무원 포함)	5급이상: 월 30,000원이하 6급이하: 월 20,000원이하	
	차. 범죄수사업무수당	1) 검찰청소속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	월 40,000원이하	

		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 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6급이하의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공무원 2) 감식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소·고발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사, 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카. 전투경찰수당	간첩의 침투 봉쇄 및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월 20,000원이하	
타. 삭제 <1993.12.31>			
파. 군인장려수당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중 정밀고가장비등 특수장비 조작운용요원 2) 3년을 초과하여 복	가) 지급액 1)의 해당자 : 월 35,000원이하 2)의 해당자 : 월 450,000원이하 3)의 해당자 : 월 130,000원이하 4)의 해당자 : 월 200,000원이하	

	무하는 군법무관등의 특수장교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 4)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 5)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	5)의 해당자 : 월 110,000원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하. 의료업무등의 수당	1) 보건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월지급액, 단위 : 원)			
		의무직렬 공무원			
		지역별	자격	금액	약무직렬 공무원
		가 (군지역)	전문의 일반의	650,000 550,000	70,000
		나 (다·라외의 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550,000 450,000	
		다 (라외의	전문의 일반의	450,000 350,000	

			도청소재지인 시지역)				
			라 (특별시·광역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400,000 300,000		
			(비고) 광역시의 읍·면과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의 읍·면에 소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가지역을 적용한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 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 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중 의료기 사	월 50,000원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가축방역 및 동 물·축산물의 검역업 무와 축산물위생처 리법에 의하여 수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 업무에 직접종사하 는 공무원[공무원임				

			4 급	1,734	1,779	1,825	1,869	1,913	1,956	2,001	2,046	2,090	2,136
			5 급	1,583	1,625	1,665	1,705	1,746	1,786	1,827	1,868	1,907	1,949
			6 급	1,447	1,484	1,521	1,558	1,596	1,631	1,669	1,705	1,742	1,779
			7 급	1,321	1,356	1,390	1,422	1,457	1,488	1,523	1,557	1,589	1,624
			소 장	2,612	2,681	2,749	2,816	2,884	2,952	3,021	3,088	3,156	3,224
			준 장	2,283	2,342	2,401	2,460	2,518	2,578	2,636	2,696	2,755	2,814
			대 령	2,081	2,136	2,190	2,243	2,297	2,351	2,405	2,459	2,513	2,566
			중 령	1,900	1,950	1,998	2,047	2,096	2,145	2,194	2,242	2,292	2,341
			소 령	1,734	1,779	1,825	1,869	1,913	1,956	2,001	2,046	2,090	2,136
			대 위	1,583	1,625	1,665	1,705	1,746	1,786	1,827	1,868	1,907	1,949
			구분 직급	카지역	타지역	파지역	하지역	거지역	너지역	더지역	러지역	머지역	버지역
			특1급	3,613	3,688	3,762	3,838	3,913	3,987	4,062	4,137	4,211	4,286
			특2급	3,291	3,359	3,428	3,494	3,562	3,631	3,699	3,767	3,834	3,902
			1 급	2,873	2,931	2,992	3,048	3,109	3,167	3,226	3,286	3,344	3,405
			2 급	2,622	2,674	2,728	2,782	2,835	2,891	2,943	2,997	3,051	3,104
			3 급	2,388	2,438	2,487	2,536	2,584	2,633	2,683	2,732	2,779	2,829
			4 급	2,178	2,223	2,268	2,313	2,357	2,401	2,445	2,489	2,533	2,579
			5 급	1,989	2,029	2,069	2,111	2,151	2,191	2,232	2,272	2,313	2,352
			6 급	1,815	1,853	1,890	1,927	1,964	2,000	2,037	2,074	2,111	2,146
			7 급	1,656	1,689	1,724	1,756	1,791	1,824	1,856	1,891	1,924	1,957
			소 장	3,291	3,359	3,428	3,494	3,562	3,631	3,699	3,767	3,834	3,902
			준 장	2,873	2,931	2,992	3,048	3,109	3,167	3,226	3,286	3,344	3,405

			대 령	2,622	2,674	2,728	2,782	2,835	2,891	2,943	2,997	3,051	3,104
			중 령	2,388	2,438	2,487	2,536	2,584	2,633	2,683	2,732	2,779	2,829
			소 령	2,178	2,223	2,268	2,313	2,357	2,401	2,445	2,489	2,533	2,579
			대 위	1,989	2,029	2,069	2,111	2,151	2,191	2,232	2,272	2,313	2,352
			(2) 현지화지급국 (월지금액)										
			구분 직급	일본 (엔)	대만 (엔터 달러)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독일 (마르크)	러시아 (독일 마르크)	카자흐스탄 (독일 마르크)	우크라이나 (독일 마르크)		
			특1급	602,310	115,803	2,876	4,792	7,740	6,852	6,852	6,852		
			특2급	551,972	105,481	2,628	4,358	7,101	6,256	6,256	6,256		
			1 급	486,039	92,587	2,313	3,787	6,259	5,489	5,489	5,489		
			2 급	439,991	84,026	2,111	3,444	5,659	4,992	4,992	4,992		
			3 급	401,181	76,522	1,931	3,130	5,164	4,555	4,555	4,555		
			4 급	361,423	69,209	1,761	2,847	4,656	4,119	4,119	4,119		
			5 급	328,073	62,748	1,607	2,588	4,219	3,741	3,741	3,741		
			6 급	295,159	56,726	1,467	2,354	3,796	3,385	3,385	3,385		
			7 급	266,389	51,275	1,338	2,137	3,431	3,073	3,073	3,073		
			소 장	551,972	105,481	2,628	4,358	7,101	6,256	6,256	6,256		
			준 장	486,039	92,587	2,313	3,787	6,259	5,489	5,489	5,489		
			대 령	439,991	84,026	2,111	3,444	5,659	4,992	4,992	4,992		
			중 령	401,181	76,522	1,931	3,130	5,164	4,555	4,555	4,555		
			소 령	361,423	69,209	1,761	2,847	4,656	4,119	4,119	4,119		
			대 위	328,073	62,748	1,607	2,588	4,219	3,741	3,741	3,741		
			구분	우즈베키	헝가리	폴란드	유 고	체 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위스		

직급	스탄 (독일 마르크)	(독일 마르크)	(독일 마르크)	(독일 마르크)	(독일 마르크)	(독일 마르크)	(독일 마르크)	(독일 마르크)	(프랑)
특1급	6,852	6,440	6,357	6,852	6,522	6,645	6,686	6,998	
특2급	6,256	5,879	5,804	6,256	5,955	6,067	6,105	6,402	
1 급	5,489	5,164	5,099	5,489	5,229	5,327	5,358	5,643	
2 급	4,992	4,694	4,634	4,992	4,752	4,842	4,872	5,105	
3 급	4,555	4,284	4,230	4,555	4,340	4,419	4,447	4,654	
4 급	4,119	3,873	3,825	4,119	3,922	3,997	4,023	4,195	
5 급	3,741	3,518	3,472	3,741	3,563	3,629	3,652	3,804	
6 급	3,385	3,182	3,140	3,385	3,222	3,283	3,304	3,428	
7 급	3,073	2,890	2,852	3,073	2,926	2,981	3,001	3,098	
소 장	6,256	5,879	5,804	6,256	5,955	6,067	6,105	6,402	
준 장	5,489	5,164	5,099	5,489	5,229	5,327	5,358	5,643	
대 령	4,992	4,694	4,634	4,992	4,752	4,842	4,872	5,105	
중 령	4,555	4,284	4,230	4,555	4,340	4,419	4,447	4,654	
소 령	4,119	3,873	3,825	4,119	3,922	3,997	4,023	4,195	
대 위	3,741	3,518	3,472	3,741	3,563	3,629	3,652	3,804	
구분 직급	프랑스 (프랑)	벨기에 (프랑)	오스트리아 (샬링)	네덜란드 (갈데)	이탈리 (리라)	핀란드 (마르카)	덴마크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특1급	25,630	156,323	53,968	8,237	6,447천	19,856	28,508	32,303	
특2급	23,500	143,205	49,376	7,548	5,928천	18,147	25,908	29,510	
1 급	20,607	126,162	43,557	6,668	5,242천	16,026	22,865	26,006	
2 급	18,769	114,103	39,448	6,023	4,774천	14,628	20,752	23,741	
3 급	17,026	104,051	35,941	5,501	4,371천	13,382	18,980	21,717	

			4 급	15,438	93,848	32,401	4,958	3,973천	12,182	17,091	19,800
			5 급	14,029	85,171	29,388	4,489	3,629천	11,123	15,507	18,089
			6 급	12,721	76,727	26,426	4,044	3,299천	10,135	14,007	16,497
			7 급	11,444	69,308	23,895	3,647	3,012천	9,243	12,780	15,062
			소 장	23,500	143,205	49,376	7,548	5,928천	18,147	25,908	29,510
			준 장	20,607	126,162	43,557	6,668	5,242천	16,026	22,865	26,006
			대 령	18,769	114,103	39,448	6,023	4,774천	14,628	20,752	23,741
			중 령	17,026	104,051	35,941	5,501	4,371천	13,382	18,980	21,717
			소 령	15,438	93,848	32,401	4,958	3,973천	12,182	17,091	19,800
			대 위	14,029	85,171	29,388	4,489	3,629천	11,123	15,507	18,089
			구분 직급	노르웨이 (크로네)	세네갈 (불프랑)	코트디부 와르 (불프랑)	카메룬 (불프랑)	가 봉 (불프랑)	알제리 (불프랑)	스페인 (페세타)	포르투갈 (에스쿠 도)
			특1급	29,003	22,546	23,797	23,082	22,546	24,607	557,550	603,680
			특2급	26,490	20,529	21,779	21,125	20,529	22,518	507,150	551,040
			1 급	23,317	18,051	19,157	18,582	18,051	19,705	444,150	481,600
			2 급	21,298	16,380	17,417	16,895	16,380	17,967	407,400	439,040
			3 급	19,475	14,912	15,884	15,408	14,912	16,317	371,700	403,200
			4 급	17,753	13,481	14,380	13,948	13,481	14,823	340,200	368,480
			5 급	16,237	12,223	13,046	12,655	12,223	13,487	311,850	337,120
			6 급	14,822	11,045	11,806	11,451	11,045	12,258	286,650	308,000
			7 급	13,526	9,967	10,715	10,394	9,967	11,069	262,500	282,240
			소 장	26,490	20,529	21,779	21,125	20,529	22,518	507,150	551,040
			준 장	23,317	18,051	19,157	18,582	18,051	19,705	444,150	481,600
			대 령	21,298	16,380	17,417	16,895	16,380	17,967	407,400	439,040

			중 령	19,475	14,912	15,884	15,408	14,912	16,317	371,700	403,200			
			소 령	17,753	13,481	14,380	13,948	13,481	14,823	340,200	368,480			
			대 위	16,237	12,223	13,046	12,655	12,223	13,487	311,850	337,120			
			구분 직급	뉴질랜드 (달러)	아일랜드 (파운드)	부르나이 (싱가폴 달러)	싱가폴 (달러)							
			특1급	5,978	2,647	5,532	5,906							
			특2급	5,439	2,408	5,043	5,382							
			1 급	4,739	2,098	4,401	4,698							
			2 급	4,317	1,912	4,015	4,284							
			3 급	3,930	1,741	3,662	3,908							
			4 급	3,578	1,584	3,341	3,566							
			5 급	3,260	1,445	3,050	3,254							
			6 급	2,970	1,317	2,787	2,970							
			7 급	2,706	1,198	2,543	2,711							
			소 장	5,439	2,408	5,043	5,382							
			준 장	4,739	2,098	4,401	4,698							
			대 령	4,317	1,912	4,015	4,284							
			중 령	3,930	1,741	3,662	3,908							
			소 령	3,578	1,584	3,341	3,566							
			대 위	3,260	1,445	3,050	3,254							
			비 고 : 주미대사, 주일대사 및 주유엔대사의 재외근무수당은 위 표에 규정 된 액에 미합중국화폐 500달러를 가산한다.											
			나. 삭제 <2000.1.8>											

다. 특수외국어수당	재외공무원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자	가) 지급액 (달러 : 미합중국화폐단위)							
		급 별		1급	2급	3급			
		구 분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서반아어·중국어)		월150달러이하	월125달러이하	월100달러이하			
		제2종 특수외국어(로어·아랍어·말레이 - 인도네시아어·포르투갈어·이태리어·힌두(인도)어·월남어·토이기어·버마어·태국어·페르샤어·스웨덴어·파갈로구어·히랍어·화란어·덴마크어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월200달러이하	월175달러이하	월150달러이하			
		급 별 기 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하는 정도의 수준			
나) 지급방법 특수외국어수당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라.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1)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 서 근무하는 자의 재외근무수당에 대한	가) 지급액 (월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감액률 직급	2%이상 4%미만	4%이상 6%미만	6%이상 8%미만	8%이상 10%미만	10%이상 12%미만		
		특1급	64	128	192	256	321		

		환율변동 차손보전수당 : 주재국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가치가 절하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이 지급받는 재외근무 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의 재외공무원	특2급	58	117	175	233	291
			1 급	51	101	152	203	253
			2 급	46	92	138	184	230
			3 급	42	84	126	168	210
			4 급	38	76	114	152	190
			5 급	35	69	104	139	173
			6 급	31	63	94	126	157
			7 급	29	57	86	114	143
			소 장	58	117	175	233	291
			준 장	50	101	152	203	253
			대 령	46	92	138	184	230
			중 령	42	84	126	168	210
			소 령	38	76	114	152	190
			대 위	35	69	104	139	173
			감액을 직급	12%이상 14%미만	14%이상 16%미만	16%이상 18%미만	18%이상 20%미만	20%이상
			특1급	385	449	513	577	641
			특2급	350	408	466	524	583
			1 급	304	355	405	456	507
			2 급	276	323	369	415	461
			3 급	251	293	335	377	419
			4 급	229	267	305	343	381
			5 급	208	242	277	312	346
			6 급	189	220	252	283	315
			7 급	172	200	229	257	286

			소 장	350	408	466	524	583
			준 장	304	355	405	456	507
			대 령	276	323	369	415	461
			중 령	251	293	335	377	419
			소 령	229	267	305	343	381
			대 위	208	242	277	312	346
			나) 지급방법 (1)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산출하여 당해 월부터 3월간 적용한다. $\bigcirc \text{감액율(증액율)}(\%) = \frac{\text{가}-\text{나}}{\text{가}} \times 100$ "가"는 감액률산출일현재 주재국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화폐 1달러의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해의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있어서의 주재국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가치를 말한다. (2)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등으로 인하여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에 의하여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률의 변동으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액을 변경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 손보전수당 : 주재국 화폐에 대한대한민국 화폐가치가 절하 또는 절상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지급받는 봉급이 사실상 감액 또는 증액된 경우의 재외공무원	가) 지급액						(월지급액, 단위 : 천원)		
			감액률 (증액률) 직급	3%이상 6%미만	6%이상 9%미만	9%이상 12%미만	12%이상 15%미만	15%이상 18%미만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특1급	46	80	115	149	184	218	252	
			특2급	43	75	107	139	171	203	235	
			1 급	39	68	98	126	155	184	213	
			2 급	37	65	93	120	148	176	204	
			3 급	34	59	85	110	135	161	186	
			4 급	29	51	73	95	117	139	161	
			5 급	26	45	64	83	103	122	141	
			6 급	22	38	54	70	86	103	119	
			7 급	18	32	45	59	72	86	99	
			소 장	43	75	107	139	171	203	235	
			준 장	39	68	98	126	155	184	213	
			대 령	37	65	93	120	148	176	204	
			중 령	34	59	85	110	135	161	186	
			소 령	29	51	73	95	117	139	161	
			대 위	26	45	64	83	103	122	141	
			감액률 (증액률) 직급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이상 33%미만	33%이상 36%미만	36%이상 39%미만	39%이상 41%미만		
			특1급	287	321	356	390	424	459		
			특2급	267	299	331	363	396	428		

			1 급	242	271	300	329	358	387	
			2 급	231	259	287	315	342	370	
			3 급	212	237	262	288	313	338	
			4 급	183	205	227	249	271	293	
			5 급	161	180	199	218	238	257	
			6 급	135	151	167	184	200	216	
			7 급	113	127	140	154	167	181	
			소 장	267	299	331	363	396	428	
			준 장	242	271	300	329	358	387	
			대 령	231	259	287	315	342	370	
			중 령	212	237	262	288	313	338	
			소 령	183	205	227	249	271	293	
			대 위	161	180	199	218	238	257	
			나) 지급방법							
			(1)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률(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산출하여 당해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bigcirc \text{ 감액율(증액율)}(\%) = \frac{\text{가}-\text{나}}{\text{가}} \times 100$$

"가"는 감액률산출일현재 대한민국화폐로 표시된 주재국화폐의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해의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있어서 대한민국화폐로 표시된 주재국화폐의 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한 값이 음의 부호인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2) 주재국화폐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재외공무원의 봉급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에 의하여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실상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률에 따라 위 표에 의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액을 재외근무수당에서 감액한 후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률(증액률)의 변동으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액을 변경 지급하거나 재외근무수당을 변경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액률(증액률)이 41%이상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	--	--	--